## 주체106(2017)년 제63권 제3호

##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본질적특징

김 형 기

오늘 나라들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대외민사분쟁들은 국제무역중재와 함께 국제민사 소송에 의해서도 적지 않게 해결되고있다.

국제무역중재와 달리 국제민사소송은 대외민사분쟁을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수단이다. 국제민사소송은 대외민사분쟁을 국가의 권력적활동으로 표현되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때문에 소송상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법률적문제인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하여 바로 리해하여야 한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한마디로 말하여 각국 재판소가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대외민 사분쟁을 재판의 절차로 취급처리할수 있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재판소가 제기된 분쟁사건을 옳바로 해결하자면 그 사건이 해당 재판소가 맡아 처리할 사건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모든 재판소는 자기 권한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해결을 내릴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한이 곧 재판관할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사건취급처리에서 법적수속절차를 지키는것을 시끄럽게 여기지 말고 제정된 수속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24폐지)

민사분쟁사건을 취급처리함에 있어서 재판관할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법적수속절차의 첫째가는 공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재판관할권문제를 옳 바로 해결하여야 사건취급처리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고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도 원만히 수집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바로 이러한 재판관할권문제는 제기된 민사분쟁사건에 대한 취급권한이 어느 재판소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 재판관할권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데 따라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할수도 있고 무효한것으로 될수도 있다.

재판관할권을 정확히 지키는 문제는 국제민사소송실천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국제민사소송에서의 관할권문제가 제기된 대외민사분쟁에 리해관계를 가지는다른 나라 재판기관들과 관련되여있고 중요하게는 국가주권실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국제민사소송에서의 재판관할권문제는 사건해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것과 관련되는것은 물론 대외민사분쟁의 특성으로부터 다른 나라 재판기관들의 활동과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문제로 된다. 때문에 재판관할권문제를 옳바로 확정하는것은 국제민사소송 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전제이며 기본조건이라고 말할수 있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본질적특징은 세가지로 찾아볼수 있다.

첫째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개별적나라들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관할권이다. 여기서 국내법이라는것은 개별적나라들에서 국제민사소송에 대하여 규제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대체로 이러한 규범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민사소송법이나 국제사법에 존재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법들에 있는 관할권관련규범들에 의해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이 정해지게 되는것이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개별적나라들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관할권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본질상 국내민사재판관할권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국제민사소송자체가 매 개 나라들에서 국내민사소송의 특수한 한 분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국제민사소 송은 대외민사분쟁의 해결을 통하여 그것을 취급처리하는 국가의 정책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적수단의 하나로 된다.

국제민사소송이 개별적인 국가들에서 해당 나라의 정책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 적수단의 하나로 되는것은 대외민사분쟁자체가 국제법상의 분쟁해결방법에 의해서가 아 니라 개별적국가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국제민사소송은 국내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공민, 법인들사이의 개별적분쟁과 같은 민사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국제민사소송에서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국적을 달리하고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이 다른 나라에 있다는것이다. 국제민사 소송의 대상으로서의 민사분쟁이 이처럼 다른 나라의 공민, 법인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과 직접적인 련관을 가진다는데로부터 그것을 대외민사분쟁,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민 사분쟁이라고 하며 이러한 대외적인 민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국제민사소송 이라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이 매개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 게 설정되는것으로 되며 결국 국제민사소송에서의 민사재판관할권이 일반국내민사소송에 서의 민사재판관할권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물론 국제민사재판관할권과 국내민사재판관할권사이에 서로 다른점도 존재한다. 그 차이점은 한마디로 말하여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이 한 나라의 재판소와 다른 나라 재판소 사이에 제기되는것이라면 국내민사재판관할권은 한 나라안의 국내재판소들사이에 제기되 는 관할권이라는데 있다.

국내의 공민이나 법인들사이의 민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국내민사소송실천에서는 대체로 재판관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기된 민사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규범이 국내의 민사소송법에 다 규정되여있기때문이다. 재판관할에 관한 규범이 존재한다는것은 재판관할권을 분쟁의 종류와 성격, 지역 등에 따라 정확히 결정할수 있게 하는 법적인 기준과 원칙이 이루어져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재판관할권문제가 해결되기때문에 국내의 민사소송실천에서는 관할권문제가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국제민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한 문제는 그것이 서로 다른 나라 재판소들사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는데로부터 국내공민들이나 법인들사이의 민사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국내민사소송실천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킨다. 그것은 아직까지 국제민사소송실천에서 재판관할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통일적규범이 존재하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이로부터 모든 나라들에서는 대외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민사 재판관할권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각이하게 해결하고있는것이다.

일단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것으로 정해진다면 국내민사재판관할

권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대외민사분쟁이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해당 나라 민사소송법 규범에 의하여 재판소의 임무와 분쟁의 종류와 성격, 분쟁이 발생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하여 규정되게 된다.

둘째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해당 국제조약에 따라 부여되는 관할권이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우에서 본바와 같이 주로 개별적나라들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대외민사분쟁의 특성으로 하여 개별적나라들에서 행사되는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민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한 개별적나라들의 법규범이 서로 다른데로부터 초래되는 필연적결과이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한 개별적나라들의 법규범의 호상차이는 재판관할권의 합리적인 분배와 이른바 국제적인 《사법상의 안전성》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부터 나라들사이에 호상 협력하여 쌍방조약이나 다방조약의 형식으로 국제민사재판관할권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활동이 적지 않게 진행되었으며 결과 일부 통일적인 국제민사소송법규범들이 출현하여 그에 따라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이 결정되고있다. 한마디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진행되고있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통일적인 국제법적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적인 범위에서 국제민사재판관할권문제를 규제하고있는데 불과하다.

그러한 국제조약들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민사 및 상사문제에 관한 재판관할권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약》을 들수 있다. 이 협약은 1978년과 1982년, 1989년 등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으며 특히 1989년협약은 《싼 쎄바스띠안협약》으로 불리우면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외에 일명 루가노협약이라고 불리우는 1988년 당시 유럽공동체성원국들과 자유무역련합성원국들사이에 체결된 《민사 및 상사문제에 대한 관할권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약》을 들수 있다.

그리고 현재 헤그국제사법회의에서 토의되고있는 전세계적인 성격을 가지는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을 들수 있다. 이 협약은 아직 그 채택여부를 예측할수 없지만 만일 이 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는 경우 민사 및 상사사건 과 관련한 재판관할권문제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이 보장될것으로 보는것이 대다수나라들 의 공통된 견해이다.

바로 이러한 국제법적규범들에 의하여 대외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민사재판 판할권이 결정되는 오늘의 현실은 국제민사재판판할권이 국내법과 함께 국제조약에 의해 서도 부여되는 관할권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셋째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부여되는 관할권이다. 국제민사소송법은 제기된 대외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것을 자기의 기본내용으로 한다고 말할수 있다.

재판관할권결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국제민사소송법은 준거법을 지정하는 저촉규 범들로 이루어지는 국제사법과 함께 대외민사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 을 하다.

준거법결정과 재판관할권결정에 대하여 전자를 립법관할, 후자를 사법관할이라고 부

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각기 자기의 규범들에 따라 해결되지만 재판관 할권결정이 준거법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준거법결정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선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결정에 의해 준거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이 통일되여있지 않고 매개 나라 재판소가 자기 나라의 국 제사법규범을 적용하고있기때문에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여야 할 국제사법규정을 정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실례는 무역을 비롯한 상사거래활동과정 에 체결되는 당사자들사이의 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미리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경우 를 놓고 잘 알수 있다.

물론 매개 나라의 국제사법에 흔히 존재하는 《자국우선의 경향》에 의해 법정지법 즉 재판이 진행되고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것도 있을수 있다. 그리고 설사 분쟁과 관련이 있는 나라들사이에 준거법을 선택하는 국제사법규범이 통일되여있는 경우에도 그 법에따라 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것이 인정될 때에는 재판관할권의 결정에 준거법의 결정이 동반되는것으로 된다.

이외에도 국제사법상의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이 법정지에 따라 다르고 저촉규범의 해석도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는가 하는데 따라 적용되여야 할 준거법도 달라질수도 있으며 특히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준거법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 의한 명시적인 준거법지정이 없는경우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당사자의 준거법지정을 위한 의사로 추정되는 결과로 인정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재판관할권결정규범에 의하여 론리적으로 준거법이 좌우된다는것이 아니라 의사해석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할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에 의해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이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제사법은 대외민사관계를 규제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이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당 대외민사관계를 규제할 준거법이 정해지게 되며 그에 따라 준거법이 다른 나라 법으로 될 때에는 그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일부 나라들이 자기 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되였을 경우 피고가 자기 나라에 없다 해도 자기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것은 국제사법상의 준거법결정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결정된다는것을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에서 부동산소재지법이 준거법으로 되는것도 역시 그 준거법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결정된다는것을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이것은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이 국제사법, 구체적으로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해진 준거법과 호상 제약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규범은 준거법을 선택하기 위한 규범과 다른 별개의 규범으로서 설사 그것의 결정 및 선택의 기준이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하여도 그 개념의실제내용이 같지 않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은 개별적나라들의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의해 부여되는 판할권인것으로 하여 순수한 국내민사재판관할권과 달리 복잡한 법률적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사법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오늘 국제민사소송실천에서는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중요성으로 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와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그러나 국제민사재판관할권문제는 나라들호상간에 제기되는 문제인것으로 하여 그리

고 일부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더욱 우심해 지는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정치법률적인 문제들을 산생시킨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자국공민이나 법인의 리익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저들의 《관할확대법》으로 분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련관성이 있다면 자기 나라 재판소의 대인관할권을 무제한하게 행사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그 나라의 해외국유재산을 동결시키거나 강제로 담보처분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은 국제민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초보적인 국제적공통기준마저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로 된다.

이 모든것은 대외민사분쟁해결을 위한 첫 공정으로 되는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옳바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 나라의 정치경제제도의 반영인 해당 나라들의 관련법들을 정확히 파악하는것과 함께 국가의 자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마리어 국제민사재판관할권, 대외민사분쟁